

2024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「2024년도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. 04. 18.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

1 사업목적

- 제주 배경 또는 소재(문화, 역사, 생활 등) 활용을 촉진하고, 기획 단계(Pre-Production)에서 촬영 단계(Production)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·활성화하고자 함

2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23.11.30.까지
- 지원내용 : 제주 영화인의 작품(제주를 배경 또는 소재로 하는 영화, 드라마, 다큐멘터리에 한함) 제작기획 및 시나리오 작업 등을 위한 기획개발 비용 지원

지원규모	지원내용	비고
총 2편(팀) × 편당 2백만원	• 제주 영화인의 작품 기획개발 비용 지원 - 최대 3인, 29박 30일 이내 지원	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사후 정산

※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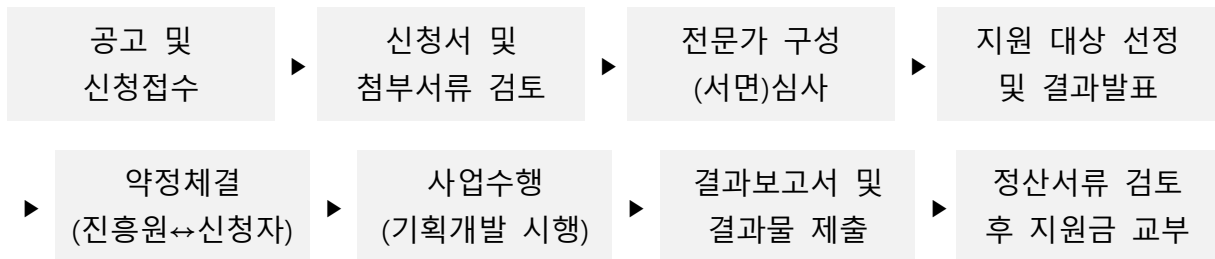
- 지원자격 : 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상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 중 영화, 드라마 등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감독, 메인 작가, 메인 프로듀서 (※ 포트폴리오 1편 이상 제출 필수)

- ※ 신청자(사) 당 1편만 지원 가능하며, 본 사업의 선정 이력이 있는 작품은 신청 불가
- ※ 신청자(사) 외 영상 제작 참여 경험이 있는 작품관계자 2인까지 동반 참여 가능
(참여자 당 '영화참여 크레딧 증명' 제출)

○ **지원금 사용 용도** : 도내 체류를 통한 작품 기획개발 비용(숙박비, 교통비, 식비, 자료수집비,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)

※ [별첨1. 지원금 집행 및 증빙 기준]에 의거 기획개발 용도만으로 집행하여야 함

○ **지원사업 일정**



3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

○ **지원조건**

- 결과알림 이후 2024.10.31. 이전까지 원하는 일정에 기획개발을 시행하고, 시행일에 맞춰 약정체결을 완료해야 함
- ※ 시행 일정은 진흥원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, 일정 중 1회 이상 진흥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음. 방문 시 사업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 취소될 수 있음
- 기획개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 보고서(정산자료 포함) 및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
- 결과물에 대한 작품 제작(영화화) 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의 지원사실을 상영본(크레딧) 및 홍보물 등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
- ※ **작품 제작 시 사전에 제작일정 및 내용을 진흥원에 필히 보고하여야 함**

소정 양식	 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JEJU CONTENTS AGENCY
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작	

- 진흥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성과물 및 수행기업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
○ **참여제한** (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)

-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
-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촬영 예정이거나 이미 촬영이 시작된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(과제 목표, 산출물 등)으로 제주특별자치도 (산하 유관기관 포함)로부터 중복하여 기획개발 지원을 받은 경우
※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, 기금, 도외 지자체,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지원 가능
하나 동일 항목의 중복수혜는 불가
- 신청일 기준 「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」에 선정된 후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-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/환수금 등이 미완료/미납 중이거나 진흥원 관련 규정 또는 협약 및 계약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-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「영화인 신문고」 기준 스텝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거나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
-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, 의결한 작품
-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 취소(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)

4 지원신청

○ **진행일정**

- 공고기간 : 2024.04.18.(목) ~ 05.14.(화)
- 접수기간 : 2024.05.07.(화) ~ 05.14.(화) 14:00까지, 8일간
※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

○ **접수방법** : 이메일 접수(flyjfly@ofjeju.kr)

※ 제출서류(양식)는 진흥원 누리집(<http://ofjeju.kr>) [공지사항] 또는 [사업신청] 참조
※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접수 가능 (제주시 신산로82 제주 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2층 영상산업팀)

- 제출서류 : [별첨2. 신청서류 체크리스트] 확인 후 작성
- 지원신청서(서명 또는 날인 필수)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 - 트리트먼트 또는 시나리오 1부 (다큐멘터리의 경우 구성안 제출)
 - 영화참여 크레딧 증명 1부
 - 기타서류 각 1부 (사업자등록증(주민등록등본)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심사위원 추천표, 체크리스트, 개인정보 동의서 등)
- ※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(사)에 있음

○ 접수 및 문의

담당자	메일주소	확인 전화
영상산업팀 장수환 선임연구원	flyjfly@ofjeju.kr	064-735-0623

5 심사 및 선정

- 심사일정 : 2024년 5월 중 (※ 진흥원 내·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)
- 심사방법
- 1차 : 서류검토(미비서류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
 - 2차 : 전문가 3인 이내 구성된 심사위원 (서면)심사
- 심사기준

심사항목		배점
주제 및 기획의도의 명확성, 이야기 구성의 완결성		40점
사업계획의 충실성, 타당성		20점
사업의 실현 및 제작실행(영화화) 가능성		20점
지역성(제주 관련 내용) 및 제주 로케이션 가능성		20점
합 계		100점
우대가점	• 진흥원 내 입주기업	2점

- ※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지원 선정
- ※ 선정 포기, 약정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

6 지원금 집행 및 정산·교부

○ 약정체결

- 최종 지원작과 약정체결 진행. 지원금액, 지원금 지급 방법, 정산 기준,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명기한 후 약정체결

○ 지원금 집행

- 신청자(사)는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, 지원금은 약정체결 시 등록한 카드의 지출만 증빙 가능함
- 집행기간은 약정서상 기획개발 수행기간으로 하며, 집행 사용처는 제주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업체의 지출 영수증만 인정됨
- 진흥원은 신청자(사)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. 이 경우 신청자(사)는 성실히 응해야 함

○ 지원금 정산 및 교부

- 신청자(사)는 기획개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흥원이 요구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원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
- 제출서류 검토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지원금 지급
 - ※ 신청인(사)의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 (지원금액 한도 초과 시 한도금액 지급, 한도 미만 시 실제 지출금액만큼 지급)
- 제출서류 : 결과보고서, 집행 증빙자료(영수증 등), 기획개발 결과물 일체(시나리오 또는 구성안, 콘티, 로케이션 헌팅 보고서 및 사진, 전문가 자문결과, 향후 계획 등)

7 기타사항

○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

신청자(사)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
- 다음의 경우 지원철회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선정을 받은 경우
 - 약정기간 내 기획개발을 시행하지 않거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지원신청 내용과 비교하여 작품의 내용, 진행 목표 등이 사전협의 없이 현격히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
 - 신청자(사)가 법령의 규정, 지원금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신청자(사)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작품(작가 포함)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

※ 원칙적으로 해당 작품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외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자(사)가 해결한 후 작품에 사용해야 함

-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- 위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협약유지가 어려울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(과제가 중단된 경우, 향후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) 및 환수조치

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(사)의 책임으로 봄

※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